

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. 9. 30 선고 2021가단175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민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9. 9.

판 결 선 고 2021. 9. 30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7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3. 27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충남 예산군 C 전 1884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를 대신 매도하여 수령한 대금으로 원고가 지낼 수 있는 거처를 짓는 데 사용해달라고 요청하였고,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6,100만 원에 매도하였다며 원고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6,000만 원으로 위 약속을 이행하기로 하였다. 그런데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7,000만 원에 매도하였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,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7,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,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7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7,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면서 정한 기한인 2020. 3. 27.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판단

피고가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2014. 2. 20.경 D에게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,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6,1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이를 수령하였을 뿐, 피고가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. 살피건대,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6,100만 원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차례(2014. 2. 24. 460만 원, 2014. 3. 21. 5,640만 원)에 걸쳐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6,100만 원을 원고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,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7,0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이에 대하여 원고는, 피고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, 위 입금내역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다시 피고에게 입금하여 준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고가 자의적으로 거래기록을 만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, 피고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,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유혜주